

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0.2.18>

※제 호				
자동차처리명령서				
소 유 자	상호(명칭)			
	주 소	(전화번호 :)		
자 동 차	등 록 번 호		차 대 번 호	
	차 종		차 명	
	방 치 된 장 소			
	보 관 된 장 소			
명 령 사 항		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제2항·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[인] ○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				

210mm×297mm

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